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가단53967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해수

변 론 종 결 2024. 4. 8.

판 결 선 고 2024. 5. 13.

주 문

1. 망 H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23. 1.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9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1995. 12. 26. 피고 B와 사이에서 피고 B의 소액대출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인 I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2565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7,978,030원 및 그 중 10,832,10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1. 10.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1. 3. 12.자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이 2021. 5. 22.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액은 2023. 10. 5.자 기준으로 58,842,876원에 이른다.

나. 피고 B와 망 H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고 B의 부친인 망 J이 2023. 1. 29. 사망하였고, 망 J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H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2) 피고 B은 2023. 1. 29. 망 J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5)을 망 H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23. 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3. 3. 27. 망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망 H은 2023.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K과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2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5. 3. 위 K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망 H의 사망 및 상속

망 H은 2023. 5. 23.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이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망 H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망 H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3. 5. 3. 망 H이 제3자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망 H이 2023.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매대금 2억 6,800만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35,733,333원(= 2억 6,800만 원 × 상속지분 2/15, 원 미만 버림)임이 인정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공동담보가액 35,733,333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8,842,876원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망 H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가액 35,733,33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망 H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가액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955,555원(= 35,733,333원 × 각 상속지분 1/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

1) 피고들은, 망 H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기로 하고 그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단 그 명의만을 망 H의 단독 명의로 해 둔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B 역시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35,736,500원을 현금으로 분배받은 이상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고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망 H으로부터 현금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후 직접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와 처분의 편의를 위해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망 H 명의로 이전한 후 망 H으로부터 처분대금을 분배받는 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② 비록 피고 B이 그 상속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후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액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용이하게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실행하여 피보전채권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 B이 분배받은 현금이 소비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현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어 보인다. 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B의 재산에 관한 공동담보의 효력이 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분배받은 현금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현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2023. 5. 12. 각 35,736,500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고 B만 망 H이 사망한 후인 2023. 5. 24.에 이르러서야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분배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고, 망 H의 장례식장에서 이를 수표로 지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분배하고자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분할협의 당시 매각대금을 분배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 B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을 미루어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당초 망 H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 B에게 분배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배하려고

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나. 망 H이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

1) 피고들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망 H이 비록 피고 B의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재정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H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인데, 이는 원고가 1996. 6. 2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0,832,109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1996.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카단3740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2001.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166981호로 승소판결을, 200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27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2009.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명4882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② 한편 피고 B은 1996. 8. 28.부터 2016. 6. 21.까지 20년의 기간 중 약 18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L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망 H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 B과 망 H은 적어도 위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B과 망 H이 동거하는 기간 동안 앞서 본 원고의 부동산가압류, 구상금 청구소송,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위 2006. 5. 2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27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은 2006. 7. 12. 피고 B의 부친인 망 J이 동거인으로서 직접 송달받기도 하였는바, 망 H은 피고 B의 모친으로서 피고 B이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자녀인 소외 M가 2003. 6. 10. 취득한 후 2003. 11. 25. 피고 B의 부친이자 위 M의 조부인 망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당시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한 M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과 5개월 후에 그 소유권을 다시 조부에게 이전한 점, 피고 B을 배제한 채 M와 망 J 간에 부동산의 명의취득 및 이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H을 포함하여 피고 B의 가족들은 경험칙상 피고 B의 채무연체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진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5,7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마치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일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위 35,733,333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다.